

정정보도청구제도 활성화의 당위성

양삼승

서울고등법원판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법학석사독일 괴팅겐대학 연수

□ 사법시험 제 14 회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저술. 「가정적 인과관계론」 외 다수

□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I. 언론보도가 부정확할 가능성

수 년전, 어느 일간신문을 읽던 중 해외 토픽란에 우간다의 외무장관인가 혹은 유엔대사인가(기억이 분명치 아니하다) 하는 여성이, 해외여행 중 파리의 어느 국제공항의 화장실에서 어느 남성과(어떠한 남성이었는지 역시 기억이 분명치 않다) 불륜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음이 보도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바로 배달된 신문을 받아들고, 큰 활자만을 읽어가던 중 우연히 눈에 띄는, 기껏해야 가로 몇 센티 미터정도의 1 단 기사에 불과하였지만, 그 여성의 직책, 그 국적,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의 특이한 점 때문에, 그 여성, 그 소속국가에 대한 약간의 경멸심과 함께, 위 기사의 기억은 수년이 지난 후까지, 상당히 선명한 정도로 나의 영상에 남아있었다

위 기사를 읽고 수년이 지난 후, 외국(독일)에서 간행되는, 언론관계의 전문잡지에, 위 사건에 관한 독일법원의 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흥미 백배하여 이를 읽어내려 갔다. 위 판결은, 위 기사의 대상으로 된 위 여성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위 판결의 내용은, 앞서 보도된 위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조작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위 판결을 읽은 순간, 나는 「그러면 그렇지, 일국의 각료급인 여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생각과 함께, 원래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 여성, 그 국가에 대하여 가졌던 경멸심에 대한 죄스러움과 무책임하게 그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분노, 문제의 위 여성은 원래의 위 기사를 읽고 나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수많은 독자들에게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 명예에 대한 엄청난 훼손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다.

이와는 또 다른 경험으로,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 기관들이 필자가 종사하는 법조계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필자가 관여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정도로 사실과 달리 보도되거나, 또는 기사로서의 효용성을 위하여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보도한 나머지 전체로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는 비단 필자만이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필자와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역시 그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고부터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된 기사의 정확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서 든 예들은 모두 언론기관의 실무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인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우연한 기회에 경험한 극히 예외적인 예를 들어 전체를 판단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면, 필자의 위와 같은 의구심이 전혀 허황된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의 어느 주요일간지의 논설위원, 편집국장을 거친 어느 언론인은, 지미라는 여덟 살의 어린이가 다섯 살 때부터 3년간이나 마약주사를 맞아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여 폴리처상까지 받았으나, 후에 이르러 위 기사가 전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워싱턴 포스트」지의 「자네트 쿡」 여기자에 의한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편집국 실무를 책임지는 일을 맡아본 일이 있다. 그때 느낀 것은 원칙적으로 부하를 무조건 신뢰 안 하고서는 신문제작은 하루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시간과 다투는 작업이라는 것이었다. 국장은 10여명의 부장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 매일매일 지극히 제한된 시간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뉴스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소경중을 가리고 지면을 배당 구성하는데, 하나하나 잘 잘못을 따지고 시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제때에 들어가지 못한 뉴스는 벌써 뉴스가 아니지 않는가. 태어나면서 곧 죽어버리는 것이 뉴스가 아닌가. 부장 역시 마찬가지다. 일선에서 뉴스현장을 지켜본 기자들이 흔히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취사선택에서 보내온 기사의 잘 잘못을 하나하나 시비할 겨를이 없다. 모자라는 것을 보태고, 넘치는 것을 깎아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뿐이지 원천적으로 기자가 취재한 원료의 존재 여부까지 데스크에 앉아 밝혀낼 천리안은 없다. 그럴 시간여유도 없다. 결국 믿는 것이다. 직속부하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하루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신문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직업상 정직성은 어느 직업보다 가장 중요한

신문기자의 자질에 속하며, 뉴스를 때 묻히지 않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글로 옮겨 쓰는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자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부장이 기자를 철통같이 믿는 데서 일어나는 실수는 어느 나라 어느 신문사에서나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수가 너무 컸고 세계적인 대신문의 공신력에 먹칠을 했다는 데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II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

이상에서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의 진실성이 항상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대의 민주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필요성 내지는 그 중요성이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보아, 과거의 절대주의 시대로부터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기관이 겪어온 험난한 투쟁의 역사와 오늘날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서, 언론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정보매체로서의 막중한 역할, 또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그리함으로써 정확한 여론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의 언론이 차지하는 기능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민주국가의 모든 헌법은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어느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각을 바꾸어서 위와 같이 중대한 기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막강한 위력에 눌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지의 점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려도 역시 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는,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실에 대한 언론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취재결과를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언론기관 특히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된 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언론기관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거의 예외 없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그 기사의 내용이 그 기사를 접한 독자가 전혀 정통하고 있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물론 상당한 부분의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소수의 경우의 피해자 보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좀더 궁극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언론기관의 보도는 진실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정확한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관 그 자체의 존재가치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그 취재의 과정이나 대상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함으로써 보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양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건의 경우에 특히 높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보도된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공공성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사의 형성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언론기관의 일방적인 취재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마치 운동경기에 있어서 한쪽 편이 손발을 묶어 놓은 채로 경기를 벌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무기대등의 원칙」에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언론기관에 의한 기사의 형성과정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기관의 실무에 전혀 문외한인 필자로서 이에 관한 숙단을 내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에서 본 언론인이 그 스스로의 경험을 기술한 바에 의하면, 기사의 형성과정이 그 진실성을 완전히 담보하기에는 극히 불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기사의 형성과정에 관여하는 언론인들의 직업상 정직성은 이를 감히 의심할 엄두도 나지 않지만, 매일매일 지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일간신문의 제작과정에 비추어 보면 불과 몇 시간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취재·검토·분석하여야 하고, 더욱이 언론의 속성상 제때에 보도하여야 하는 시간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 보도의 공정성이 100%보장된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사의 상당부분이 일선에서 뉴스현장을 지켜본 기자들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 과연 이와 같은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익은 이를 전혀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세째로, 오늘날 언론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언론 기관들은 그 규모의 방대함과 그 미치는 영향력의 막강함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에 못지 아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와 언론기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의 통제 내지는 간섭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지만,

방향을 바꾸어 언론기관과 국민 개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언론기관이 막강한 권력의 보유자로서 국민의 권익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할 수 있는 주체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의 근본이념이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견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에 대한 견제 내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방법도 역시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의 탄압이 극심한 나머지 언론의 자유, 국가통제로부터 언론의 독립만을 강조하였던 시대와는,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변천 되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III. 언론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법

앞에서 언론기관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연 권리의 침해 받은 국민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현행법상으로는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로 허위의 보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무마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인 구제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사과공고를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손해배상의 방법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역시 직접적인 구제방법으로서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장 치명적인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원리상 그 고의·과실 및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부담의 가중과 함께,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좀더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방법은 있는가의 점에 생각이 미치게 됨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러한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방법을 탐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첫째로,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가 행해지면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기억은 현저하게 감소되어 가는 것이므로, 그 보도에 의하여 침해를 입은 자의 구제방법 또한 최단시간에의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의 형성과정은 어디까지나 언론기관의 일방적인 취재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고, 그 기사의 형성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구제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측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기대등의 원칙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째로는, 언론기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정확한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 인간의 불완전함과 아울러 이해관계가 얽힌 쌍방당사자 사이의 문제는 그 쌍방의 당사자 스스로가 가장 그 진실에 접근하여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진실보도에 의한 정확한 여론의 형성은 반대편 당사자의 입장도 역시 이를 충분히 고려·반영하여 줌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당사자간의 권리단계에 다름이 있어 그 분쟁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진전된 경우에, 우리의 법체계는 그 궁극적인 진실을 발견하여 최종적인 판결에 이르기 전이라도 그 권리 침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언론기관에 의한 권리침해의 경우에만, 반드시 신중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의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이고 급박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언론기본법 제 49 조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가 행해진 경우, 이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원의 본안판결이 있기 이전에 원래의 보도가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의 방법, 지면, 시간에, 그 원래의 기사의 진실성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은 반대당사자의 의견을 그대로 보도하여 주는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야말로, 앞에서 본, 언론기관의 잘못일 수도 있는 오보로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근본이념은, 언론보도도 역시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불완전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에 의한 진실의 발견은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쌍방당사자의 서로 대등한 토론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직시하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정보도청구제도를 어떠한 형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각 나라의 태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위 제도에 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이 위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언론기관이 직접 접촉하게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도 합리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도의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인한 혼란이나 언론기관의 저항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완충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위와 같은 근본취지를 우선은 언론기관 스스로가 허심탄회하고 보다 대국적인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전체가 이를 보다 널리 알고 이용하게 됨으로써, 언론기관의 심층취재 대상으로 된 기업이나 개인은 변명의 기회도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리고 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에 의하여 편집·출판되는 불과 10여 페이지짜리의 간행물에도 그 마지막 몇 페이지는, 정정보도기사로 마무리되어지고, 또한 정정보도기사에 대한 또 한번의 정정보도기사가 게재되곤 하는 언론 선진국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을는지…….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